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7,997,213	14,939,916
일반회계	453,526,536	13,605,796
특별회계	44,470,677	1,334,120
기타특별회계	44,470,677	1,334,120
상수도(특별)	8,598,385	257,952
하수도(특별)	1,892,174	56,765
수질개선(특별)	23,613,840	708,415
의료급여기금(특별)	1,298,845	38,965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	922,788	27,684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	3,496,588	104,898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	40,819	1,22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	2,341,256	70,238
경영수익사업(특별)	1,921,409	57,642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	344,573	10,33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782,79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